



**DAEGU TUNINGCAR RACING**

# 2022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대회규정

## 목 차

서 문 .....	1
정의와 약어 .....	1
<b>제 1 장. 총 칙 .....</b>	<b>3</b>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제 2 조. 대회 목적	
제 3 조. 주최자	
제 4 조. 주최자의 권한	
제 5 조. 준수사항	
<b>제 2 장. 대회운영규정(일반) .....</b>	<b>5</b>
제 1 조. 개최종목	
제 2 조. 대회일정	
제 3 조. 클래스	
제 4 조. 대회 참가비 및 상금	
제 5 조. 참가신청	
제 6 조.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	
제 7 조. 출전대수	
제 8 조. 보험	
<b>제 3 장. 참가자 준수사항 .....</b>	<b>11</b>
제 1 조. 참가자의 책임 및 의무	
제 2 조. 참가자의 복장	
제 3 조. 메디컬 체크	
제 4 조. 드라이버 브리핑	
제 5 조. 참가자 및 차량 변경	
제 6 조. 차량 반출	
제 7 조. 질서의 유지	
<b>제 4 장. 드래그 일반규정 .....</b>	<b>14</b>
제 1 조. 경기장	
제 2 조. 연습주행	
제 3 조. 예선/결승	
제 4 조. 스타트 절차	

-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제 6 조. 경기 종료 및 회차
- 제 7 조. 기록계측
- 제 8 조. 경기의 중단과 재개
- 제 9 조. 경기포기
- 제 10 조. 항의
- 제 11 조. 항소

**제 5 장. 드래그 기술규정 ..... 18**

-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 제 2 조. 안전규정

**제 6 장. 짐카나 일반규정 ..... 22**

- 제 1 조. 경기장
- 제 2 조. 연습주행
- 제 3 조. 예선 및 결승
- 제 4 조. 스타트 절차
-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제 6 조. 경기 종료 및 복귀
- 제 7 조. 기록계측
- 제 8 조. 경기의 중단과 재개
- 제 9 조. 경기포기

**제 7 장. 짐카나 기술규정 ..... 25**

-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 제 2 조. 안전규정

**제 8 장. 부 칙 ..... 28**

- 제 1 조. 규정위반
- 제 2 조. 규정의 효력
- 제 3 조. 규정의 해석
- 제 4 조. 규정의 변경

## 서 문

대구광역시가 주관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최하는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이하 대회)는 본 대회규정(부칙포함), 추가규정(홈페이지 공지)과 FIA국제스포츠규칙(이하 'ISC규칙'), (사)대한자동차 경주협회 규칙(이하 'KARA규칙')을 사용하며, 모든 참가자(KARA, 주최자, 팀, 드라이버, 오피셜, 경기장)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정의와 약어(Definitions & Abbreviations)

- **드래그레이스(Drag race, 이하 드래그)** : 드래그레이스는 직선(1/4마일 또는 400m)을 가속하여 결승지점을 최단시간 또는 목표시간에 가깝게 통과하여 순위를 정하는 경기이다. 지정된 시작 지점에서 1:1 대결방식으로 출발, 먼저 결승지점에 들어오는 토너먼트/녹아웃(Knock-out) 방식과 목표시간을 선택하여 해당 시간에 근접한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타겟트라이얼(Target-trial), 가장 빠른 기록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타임 트라이얼(Time-trial)방식이 주로 쓰인다.
- **짐카나(Gymkhana)** : 짐카나는 100m×60m 정도의 공간에 라바콘(Rubber cone)으로 코스를 구성하고, 해당 코스를 빠른 시간내에 주파하는 경기이다. 코스는 8/S자, 슬라럼, 180/270/360도 회전 등으로 구성되며, 자동차를 제어하는 다양한 기술을 요한다는 점에서 모터스포츠 입문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정된 시작지점에서 1:1 대결방식으로 출발, 먼저 코스를 주파하는 토너먼트/녹아웃(Knock-out) 방식과 목표시간을 선택하여 해당 시간에 근접한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타겟트라이얼(Target-trial), 가장 빠른 기록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타임 트라이얼 (Time-trial)방식이 주로 쓰인다.
- **조직위** : 2022 대구 튜닝카 레이싱대회 조직위원회
- **ASN** : Authority Sporting National의 약어로 FIA가 승인한 국내 스포츠 권한 보유자
- **ISC 규칙** : International Sporting Code의 약어로 FIA 국제스포츠규칙과 그 부칙
-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한국의 ASN인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약어
- **경기(Competition)** : 이벤트 내 진행되는 경기로 연습주행, 예선, 결승으로 구분
- **공식프로그램(Official Program)** : 조직위가 이벤트 개최 전 참가자에게 알리는 공식문서
- **공식통지(Official Notice)** : 조직위 혹은 경기위원회가 경기장에서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
- **오피셜(Official)** : 심판의 권한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는 진행요원을 통칭함
- **드라이버(Driver)** :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엔트리를 부여 받은 자
- **라이선스(License)** : KARA 공인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ASN 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

- 이벤트(Event) : 대회 모든 일정을 포함하여 연습주행부터 본선주행까지 모든 일정을 말함
- 본선주행(Main Race) : 기록계측 및 순위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행
- 연습주행(Practice) : 본선주행 전 실시하는 테스트 및 연습 목적의 주행
- 참가자(Participants) :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 혹은 팀 단체를 말함
- 참가차량(Automobile) :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직위의 규정을 충족하여 확인된 차량
- 경기장(Track): 경기가 진행되는 공간 또는 장소를 말함
- 특별규정(Supplementary Regulations) : 본 규정 외 조직위가 별도로 발표하는 추가규정을 말함
- 팀크루(Team Crew) : 참가 팀의 멤버들로 피트 내에 상주하며, 차량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
- 피트(Garage) : 참가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지
- 경기지원차량(Support Car) : 경기 중 발생하는 유사상황(차량고장, 사고 등)에 대응하여 트랙에 진입, 경기재개를 위한 현장정리 활동을 수행하는 오피셜 차량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 1.1. 국 문: 2022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 1.2. 영 문: 2022 Daegu Tuning Car Racing

### 제 2 조. 대회 목적

- 2.1. 본 대회는 기초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아마추어 대회로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주최자

- 3.1. 명 칭: (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3.2.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 3.3. 사무국: 053) 670-7800 (Fax - 053) 615-0201)

### 제 4 조. 주최자의 권한

- 4.1. 주최자는 대회장소, 일정, 클래스, 관련규정 등 대회와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 4.2. 주최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직위의 승인을 통해 대회의 연기, 취소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4.3. 주최자는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며, 이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4. 주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직위의 승인을 통해 참가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4.4.1. 규정 및 스포츠맨십 위반을 행한 전력이 있는 참가자
  - 4.4.2. 대회와 관련하여 비 매너 행위 또는 언행을 하였거나 공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최측, 또는 경기임원에게 항의한 전력이 있는 참가자
  - 4.4.3.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주최자가 건강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참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참가자
  - 4.4.4. 대회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에 서명이 누락된 참가자
  - 4.4.5. 기타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참가자
- 4.5. 주최자는 참가신청 마감 후 각 클래스 당 드라이버의 숫자를 고려하여 해당 클래스를 재편성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취소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전액 반환한다. 이 때 클래스 별 최소 참가대수는 각 경기별 규정에 의거한다.

- 4.6. 주최자는 참가자의 참가비의 반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 4.7. 주최자는 대회 후원사와 직접 접촉하여 대회 후원을 유치하고, 후원사 노출을 위해 모든 참가 차량에 대한 후원사 로고/제품 등의 부착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 4.8. 주최자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보도, 방송, 방영, 출판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제 3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4.9. 주최자는 사고, 차량고장, 노면오염 및 파손, 천재지변 등으로 더 이상의 주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기를 중단 및 종료할 수 있다
- 4.10. 주최자는 대회 전반과 관련하여 조직위를 관리 및 보조하며, 조직위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4.10.1. 조직위는 주최자가 주최하는 대회의 경기운영 및 규정의 제정과 적용, 규칙의 집행을 주목적으로 한다.
  - 4.10.2. 조직위의 의무
    - 4.10.2.1. 대회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관리
    - 4.10.2.2. 대회운영
    - 4.10.2.3. 심사위원회 및 경기위원회 구성

## 제 5 조. 준수사항

- 5.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와 경기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5.2. 참가차량은 각 경기별 기술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참가자는 차량검사의 의무를 가진다.

## 제 2 장. 대회운영규정(일반)

### 제 1 조. 개최종목

- 1.1. 드래그
- 1.2. 짐카나

### 제 2 조. 대회일정

#### 2.1.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장 소
연습주행	11월 5일(토) (시간 별도 안내)	- 드래그	대구주행시험장 (대구 달성군)
예선/결승	11월 6일(일) (08:00~16:00)	- 짐카나	

표 1 개최 장소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주최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제 3 조. 클래스

#### 3.1. 경기방식 및 클래스

3.1.1. 대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는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 분	경기방식	경기내용	비 고
드래그	연습	- 400m 직선주행에 대한 연습주행 실시 - 클래스별 기준초 확인 및 클래스 최종 확정	심사위원회 판단 하 실시
	본선	- 클래스별 3판 2승 토너먼트로 순위부여 ※ 3, 4위 결정전, 패자부활전은 단판승 - 결승전은 단판승으로 순위부여	
짐카나	예선	- 예선주행을 통한 최고기록 계측 및 본선 토너먼트 대진표 결정 - 예선주행의 최고기록은 이벤트 주행의 기준 기록으로 사용 ※ 예선주행 불참 시 최후미기록 기준으로 목표기록 부여	
	본선	- 토너먼트는 코스 상황 및 경기일정에 따라 단판승 또는 2선승으로 순위부여	대회 결승 전 공식통지 예정
	이벤트	- 본선경기 탈락자 대상 이벤트 주행 실시 - 예선주행 최고기록 바탕의 타임타겟 이벤트 실시	

표 2 개최 경기방식 및 내용

3.1.2. 경기방식 별 클래스는 [표 3]과 같다.

구 분	클래스 명	클래스 상세	기준초	비 고
드래그	슈퍼 통합 4륜	400마력 이상의 국산 및 수입차(4륜구동)	없음	튜닝제한 없음
	슈퍼 수입 2륜	400마력 이상의 수입차(2륜구동)	없음	
	슈퍼 국산 2륜	400마력 이상의 국산차(2륜구동)	없음	
	400 클래스	400마력 이상 500마력 미만의 국산/수입차	11.5초	
	340 클래스	340마력 이상 400마력 미만의 국산/수입차	12.4초	배기량 3,900cc 이상/ 3,000cc 이상 과급차량은 340 클래스부터 출전 가능
	290 클래스	290마력 이상 340마력 미만의 국산/수입차	12.9초	배기량 2,900cc 이상은 290 클래스부터 출전 가능
	240 클래스	240마력 이상 290마력 미만의 국산/수입차	13.4초	
짐카나	FWD	전륜구동 방식 국산/수입차	-	자작차 등은 별도 문의
	RWD	후륜구동 방식 국산/수입차	-	
	4WD	4륜구동 방식 국산/수입차	-	
	경차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자동차	-	구동계별 클래스 지원 가능

표 3 개최 경기방식 및 내용

3.1.4. 각 종목별 참가자는 제4장 및 제6장의 종목별 일반규정을 준수한다.

3.1.3. 각 종목별 참가차량에 대한 상세 기술규정은 제5장 및 제7장의 기술규정을 준수한다.

### 3.2. 참가자격

3.2.1. 모든 드라이버는 2종 보통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3.2.2. 본 경기는 KARA 공인 경기로 모든 드라이버는 유효한 KARA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 요구 라이선스 : (드래그)국내 드래그 D등급 이상 / (짐카나)국내 짐카나

3.3. 조직위는 상기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미 자격자의 출전이 확인될 경우 기존 수상에 대한 권리 박탈 및 향후 경기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3.4. 조직위는 본 규정 제1장 제4조 4.4.5에 의거 법률위반, 미풍양속저해, 상호신뢰 훼손, 비방, 허위정보 유포, 마약류 투여, 대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대회운영방해 등의 행위로 대회의

권위와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를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제 4 조. 대회 참가비 및 상금

4.1. 각 클래스별 참가비는 [표 4]와 같다.

구 분	클래스	참가비(VAT 포함)
드래그	슈퍼 통합 4륜	200,000원
	슈퍼 수입 2륜	
	슈퍼 국산 2륜	
	400 클래스	
	340 클래스	
	290 클래스	
	240 클래스	
짐카나	FWD	160,000원
	RWD	
	4WD	
	경차	

표 4 클래스별 참가비 ※ 참가선수 보험 및 라이선스 비용 포함비용

4.2. 대회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참가비 환불 기준은 본 규정 제2장 제5조 5.5항에 의거한다.

4.3. 대회 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4.3.1. 드래그 상금 기준

클래스 별 참가대수	등수별 상금		
	1위	2위	3위
4대 미만	타 클래스에 통합		
4대 이상 ~ 8대 미만	400,000	300,000	200,000
8대 이상 ~ 12대 미만	500,000	400,000	300,000
12대 이상	650,000	550,000	450,000

표 5 클래스 별 참가대수 기준 상금 지급액

#### 4.3.2. 짐카나 상금 기준

클래스 별 참가대수	등수별 상금		
	1위	2위	3위
8대 미만	타 클래스에 통합		
8대 이상 ~ 16대 미만	400,000	300,000	200,000
16대 이상 ~ 32대 미만	500,000	400,000	300,000
이벤트	100,000 상당 상품	50,000 상당 상품	50,000 상당 상품

표 6 클래스 별 참가대수 기준 상금 지급액

4.3.3. 등수별 상금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거 해당 금액 상당의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4.3.4. 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3.5. 상금은 대회종료 후 2주 이내 지급한다.

### 제 5 조. 참가신청

5.1.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5.1.1. 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www.daegutuningcar.or.kr](http://www.daegutuningcar.or.kr) 에 공지한다.

5.1.2. 시스템상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모집 불가 시 이메일 접수로 전환한다.

5.2.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참가비 납부 방법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참가신청 완료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참가비 입금 확인 시점으로 한다.

5.3. 참가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참가비를 입금할 경우 10%의 지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참가 접수기간 공식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5.4. 참가신청 취소는 참가 접수기간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기간 경과 시 납부한 대회 참가비는 취소시기에 따라 [표 7]과 같은 비율로 환불된다.

구 분	접수마감 전 까지	접수마감 ~ 대회 7일 전	대회 7일 전 ~ 대회당일
환불 비율	100%	50%	환불 불가

표 7 대회 참가 취소 시 참가비 환불기준

5.5. 제1장 제4조 4.9항에 의거 대회가 취소될 경우 [표 8]과 같은 비율로 환불된다.

구 분	예선주행 전 까지	예선주행 ~ 본선주행	토너먼트 8강전 이후
환불 비율	100%	50%	0%

표 8 대회 취소 시 참가비 환불기준

제 6 조.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

- 6.1. 참가자의 엔트리(Entry)번호는 경기 및 클래스별 접수순으로 부여한다.
- 6.2. 모든 참가차량은 주최자가 제공한 엔트리번호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6.3. 엔트리번호 및 리버리킷(Livery Kit)은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일괄 제공하며, 참가자는 차량 검차 및 이벤트 전 까지 이를 부여받아 부착해야 한다.
- 6.4. 리버리킷 부착 위치와 디자인, 규격은 별도 공지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참가차량은 출전이 제한될 수 있다.
- 6.5. 주최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스티커에 대해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6.5.1.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및 스티커
  - 6.5.2. 정치, 종교에 관련된 광고 및 스티커
  - 6.5.3. 기타 주최자가 인정하지 않는 광고 및 스티커
- 6.6. 주최자는 주최자가 정한 위치(차량)에 후원사와 관련된 스티커를 부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참가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6.7. 주최자에서 정한 광고물은 다른 부착물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되며, 주최자가 제공한 리버리킷 이외의 자체 차량 광고물은 엔트리번호 및 기타 리버리킷을 판독하기 어려운 색상이나 디자인, 위치여서는 안 된다.
- 6.8. 차량검차 중 조직위에 의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광고물은 철거, 수정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르지 않은 참가차량은 출전이 거부될 수 있다.
- 6.9. 주최자의 광고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되는 참가차량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기출전 거부 및 패널티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7 조. 출전대수

- 7.1.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전 대수는 7.1.1.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7.1.1. 각 경기별 최대 참가모집대수는 [표 9]과 같다.

구 분	최대 참가대수	비 고
드래그	전체 100대	참가대수 4대 미만 타 클래스 통·폐합
짐카나	전체 50대	참가대수 8대 미만 타 클래스 통·폐합
총 계	150대	

표 9 경기별 최대 참가모집대수

- 7.2. 경기별 최대 참가대수를 초과한 이후 참가 신청자에게는 참가비 입금이 확인된 순서로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단, 대회 사정상 대기번호를 부여받은 참가자에 대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는 전액 환불된다.
- 7.3. 최대 참가대수는 주최측 및 조직위의 판단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7.3.1. 각 경기의 참가자가 미달되어 전체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위의 판단에 따라 추가 참가자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 7.4. 대회 출전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
- 7.5.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 참가가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 참가자의 경우 본 규정 제2장 제3조 3.2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때, 참가비용은 본 규정 제2장 제4조를 따르도록 한다.

## 제 8 조. 보험

- 8.1. 주최자는 대회 및 경기관계자와 관련 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참가자 피해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 대회 외적인 부분(행사장)은 주최자가 별도 선정한 행사운영대행사가 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제 3 장. 참가자 준수사항

#### 제 1 조. 참가자의 책임 및 의무

- 1.1. 참가자는 본 규칙에 따라 공손한 언행과 스포츠맨십에 의거한 예절을 가져야 하며, 대회 관계자 및 다른 참가자 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1.2. 참가자는 본 경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참가한 것을 인정하며, 참가자 자신이나 참가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 1.3.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타 참가자에게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고의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는 1.4에 의한다.
- 1.4.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당사자는 아래의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 주최자(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배상)
    - ※ 주최자의 시설물(노면 포함) 보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고의사고 시)사고피해 당사자
- 1.5. 참가신청 절차를 통해 엔트리번호를 부여받은 참가자는 반드시 경기에 출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대회 사무국으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주최자가 주최하는 다른 대회에 대한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1.6. 모든 참가자는 대회 및 관련 행사의 공식일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불참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 제 2 조. 참가자의 복장

- 2.1. 모든 참가자는 규정에 의거 안전 장구 및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2.2. 참가자는 주최측에서 지정하는 패치가 있을 경우 패치 부착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최자는 재제를 가할 수 있다.
  - 2.2.1. 미풍양속을 해치는 패치
  - 2.2.2. 정치, 종교에 관련된 패치
  - 2.2.3. 기타 주최자가 인정하지 않는 패치

#### 제 3 조. 메디컬 체크

- 3.1. 조직위는 이벤트 당일 의료팀 및 전담의사와 함께 참가자에 대한 메디컬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자 전원은 메디컬 체크에 참여하여 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2. 조직위는 메디컬 체크 결과 참가자의 건강 및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참가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3.3. 메디컬 체크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하여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메디컬 체크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조직위의 판단에 따라 추가 메디컬 체크를 통해 경기 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4. 참가자는 이벤트 기간 중 음주 및 세계반도핑기구(WADA) 에서 금지 한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조직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3.5. 참가자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대회전일 및 당일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될 경우 이를 반드시 조직위에 알려야한다. 이 때, 당사자의 참가비는 전액 환불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내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의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 드라이버 브리핑

- 4.1. 대회 본선 당일 아침 드라이버 브리핑을 실시하며, 참가자 수에 따라 경기 및 클래스 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4.2. 드라이버 브리핑은 사전 공지된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며, 참가자 전원은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가하여 주요 전달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4.3.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자는 이벤트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가하지 못 한 경우 경기위원장의 판단 및 승인에 따라 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4.4. 드라이버 브리핑의 내용은 경기규정을 바탕으로 하나, 대회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드라이버 브리핑에서 경기위원장의 전달사항 등 공식통지를 우선시 하여 대회에 적용한다.

#### 제 5 조. 참가자 및 참가차량 변경

- 5.1. 동일한 참가차량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자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된 참가자는 본 규정 제2장 제3조 3.2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 5.2. 변경된 참가자는 각 규정에 의거 안전 장구 및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5.3. 참가자는 이벤트에 반드시 사전 등록 및 검차된 참가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 5.4. 연습 및 본선주행 중 참가차량의 고장, 파손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차량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차량 변경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5.5.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참가차량 변경은 동일 클래스에 한해서만 허가되며, 조직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차량 고장을 우려한 예비차량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 6 조. 차량 반출

- 6.1 각 클래스별 순위차량은 경기 종료 후 조직위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여야 한다.

## 제 7 조. 질서의 유지

- 7.1. 참가자는 본 규정 외에 국가에서 규정하는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2. 참가자는 대회 공식 리버리킷이 부착된 경기 차량으로 난폭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사항 적발 시 심사위원회 및 경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3. 참가자는 본 규정의 종목별 경기방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형사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4. 참가자는 참가차량규정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상권 박탈,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7.5. 전염병 상황 등으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될 경우 참가자 및 관계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이때, 참가자 별 출입 가능 관계자는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 7.6. 참가차량 및 관계차량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 7.7. 반려동물의 경기장 전체 입장은 금지된다. 단, 안내견 등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은 반려동물은 예외로 한다.
- 7.8. 대회당일 경기장 내 음주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7.9. 대회당일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한다.

## 제 4 장. 드래그 일반규정

### 제 1 조. 경기장

- 1.1. 이벤트는 대구주행시험장 고속주회로 내 직선구간(1.2km)에서 진행한다.
- 1.2. 주행기록 측정은 출발점으로부터 400m 지점까지의 가속구간에서 이루어지며, 가속구간이 끝난 이후 모든 경기차량은 결승선으로부터 400m 구간까지 시속 80km/h이하로 감속한 뒤 정속주행을 통해 지정된 장소로 복귀한다.

### 제 2 조. 연습주행

- 2.1. 연습주행 시 대회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참가자 기준초 확인 등이 이루어지며, 모든 참가자는 연습주행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 2.2. 연습주행은 현장 오피셜의 통제 하 진행된다.
- 2.3. 연습주행 중 기준초 이하 기록의 드라이버는 상위 클래스로 편입될 수 있다.

### 제 3 조. 본선

- 3.1. 본선은 3판 2승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주행 레인을 변경한다.
- 3.2. 다음의 경기는 단판승을 원칙으로 한다.
  - 3.2.1. 결승전(1, 2위 결정전)
  - 3.2.2. 3, 4위 결정전
  - 3.2.3. 패자부활전
- 3.3. 본선 주행 중 기준초 이하 기록 시 실격처리 한다. 또한, 결승에서 기준초 이하의 기록으로 얻은 순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3.4. 계측기 오작동으로 인한 계측기록 미 측정 시 해당 주행회차는 무효처리하며, 재주행 또는 재대결을 실시한다.

### 제 4 조. 스타트 절차

- 4.1. 모든 클래스의 스타트는 스탠딩 스타트(Standing Start)로 진행한다.
- 4.2. 이벤트 일정 중 차량의 주행구간(경기 및 회차)에 오피셜 외 모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 4.3. 참가차량은 스타트 전 안전장구의 착용을 완료하고 오피셜의 안내에 따라 자력으로 스타트 라인에 정렬한다.
- 4.4. 참가차량은 출발신호기의 프리스테이지(Pre-Stage), 스테이지(Stage) 두 개의 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서행 이동하여 두 개의 신호가 모두 점등 후 정차한다.
- 4.5. 스타트 방법은 4.4.의 스테이징(Staging) 완료 후 황색등(Amber)의 순차적인 점등 이후의 임의의 시간 간격을 두고 녹색등(Green)이 점등되는 랜덤스타트(Random Start) 방법과

스태이징 완료 후 황색등(Amber)의 동시 점등 및 이후 녹색등이 점등되는 프로스타트(Pro Start) 방법이 운영될 수 있다.

- 4.6. 녹색등이 점등되기 전 출발하는 차량은 플라잉스타트(Flying Start)로 해당 주행회차의 기록은 무효처리 된다.
- 4.7. 출발순서에 따른 주행에 1분 이상 이유 없이 스타트라인에 대기하지 않는 차량은 경기 포기로 처리된다.
- 4.8. 참가차량은 스타이징 전 대기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4.8.1. 번아웃 등 노면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 4.8.2. 흡연 및 쓰레기 투기 행위
  - 4.8.3. 지나친 제자리 공회전(Rev-up), 경적작동 등 소음유발을 통해 경기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 4.8.4. 오피셜의 허가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4.8.5. 오피셜의 허가 없이 대기장소에 팀크루 등이 출입하는 행위
  - 4.8.6. 오피셜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5.1. 패독 및 피트 내에서 차량은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 5.2. 패독 및 피트 내 과속, 과도한 제자리 공회전(Rev-up) 등을 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 또는 참가자 소속 참가팀 전체에 대한 1초 패널티를 부과한다.
- 5.3. 참가차량은 패독 내 정해진 공간에 대기하여야 한다.
- 5.4. 경기중 일반적인 차량의 점검 이외의 정비를 할 수 없으며, 정비가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6 조. 경기 종료 및 회차

- 6.1.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차량은 제4장 제1조 1.2.에 의거하여 차량을 회차한다.
- 6.2. 이 때, 회차 구간에서의 과속, 급제동, 급가속 및 번아웃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 제 7 조. 기록계측

- 7.1. 기록계측시스템은 1/1000초까지 기록계측이 가능한 드래그 전용 시스템을 사용한다.
- 7.2. 주행기록은 녹색등(Green) 이후 반응시간인 RT(Reaction Time)기록과 주행시간인 ET(Elapsed Time)기록을 합산한 TT(Total Time)기록 및 피니쉬 지점의 통과속도를 표기한다.
- 7.3. 주행의 순위는 TT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며 TT기록이 동일 할 경우 RT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 7.4. 각 클래스별 라운드(16강, 8강, 4강, 결승전)의 종료 후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록을 게시한다.
- 7.5. 기록에 대한 현장 항의는 불가하며, 제4장 제10조의 절차에 의하여 사무국에 항의사항을 접수한다.

#### 제 8 조. 경기의 중단과 재개

- 8.1. 본 규정 제1장 4조 4.9에 의거 더 이상의 주행 및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조직위가 판단할 경우 경기는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8.2. 경기가 중단될 경우 조직위는 해당 사실을 공식통지를 통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참가자는 안내에 따라 경기중단과 경기종료 및 재개에 대비한다.
- 8.3. 경기중단 및 종료 시 예선이 진행된 경우 예선의 기록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다. 예선 이전에 경기가 종료된 경우 순위없음으로 경기를 종료하고 조직위는 50%의 참가비를 환불한다.
- 8.4. 제1장 4조 4.9.에 해당되는 상황의 종료로 경기가 재개된 경우 조직위는 이후 일정에 따른 경기방법과 일정표를 경기재개 30분 전 공지한다.

#### 제 9 조. 경기포기 (Retire)

- 9.1.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자력주행이 불가능하다고 조직위가 판단할 경우 경기포기로 간주한다.
- 9.2. 조직위의 경기포기 판단 및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남은 경기를 포기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 또는 참가자는 이를 대회사무국에게 보고해야 한다.
- 9.3. 경기포기 보고는 관련양식에 해당 드라이버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진행된다.
- 9.4. 차량 사고로 인하여 해당 드라이버가 직접 경기포기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팀 크루의 대리보고 및 경기위원장의 판단으로 경기를 포기할 수 있다.

#### 제 10 조. 항의

- 10.1. 대회 항의에 관련한 사항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조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10.2. 참가선수는 기록, 규정위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항의 수수료 30만원과 함께 사무국에 항의사항을 접수한다.**
- 10.3. 각 항의 내용은 대회사무국의 사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며, 심사위원회는 항의 내용에 대한 회의 진행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10.2.1. 경기 결과에 관한 항의는 해당 차수의 잠정기록 발표 후 30 분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0분 이후 공식기록이 된다.
  - 10.2.2. 지속적인 항의를 통해 경기 전반의 지연 및 진행방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 재제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0.2.3. 항의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 등에 의해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사항의 경우, 통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10.3. 항의수수료는 항의가 인정될 시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지 않을 시 반환되지 않고 대회 사무국에 귀속된다.

#### 제 11 조. 항소

11.1.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결정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며, 대회 항소에 관련한 사항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제 5 장. 드래그 기술규정

###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1.1. 검사 중 기술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을 실시하며, 시정요청 미 이행 및 이에 따른 조직위의 심의에 따라 전체 경기에 대한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1.2. 클래스별 참가차량에 대한 기술규정은 다음과 같다.

####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500마력 이상의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4륜구동 차량</li> <li>- 도로교통법에 의거 튜닝 및 부품에 대한 구조변경을 권고</li> <li>- 시트에 대한 탈거는 허용되나 내장재 및 에어백 탈거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롤케이지, 보강재 장착 등에 의한 내장재 탈거는 허용</li> </ul> </li> <li>- 노면 파손위험이 없는 윌리바에 한해서 장착 허용</li> <li>-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li> <li>※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li> </ul> </li> <li>- 트레드웨어 40 이상의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전 제한</li> </ul> </li> <li>-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하며, 연료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FIA 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사용만을 허용</li> </ul> </li> </ul>	

표 10 슈퍼 통합 4륜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 1.2.2. 슈퍼 수입 2륜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500마력 이상의 정식 등록된 수입 2륜구동(전륜 또는 후륜구동) 차량</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1 슈퍼 수입 2륜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 1.2.3. 슈퍼 국산 2륜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500마력 이상의 정식 등록된 국산 2륜구동(전륜 또는 후륜구동)차량</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2 슈퍼 국산 2륜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4. 400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400마력 이상 ~ 500마력 미만의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3 400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5. 340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340마력 이상 ~ 400마력 미만의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li> <li>※ 배기량 3,900cc 이상, 3,000cc 이상 과급차량은 340 클래스부터 출전 가능</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4 340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6. 290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290마력 이상 ~ 340마력 미만의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li> <li>※ 배기량 2,900cc 이상 차량은 290 클래스부터 출전 가능</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5 290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1.2.7. 240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기준 240마력 이상 ~ 290마력 미만의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차량</li> <li>- 이하 1.2.1. 슈퍼 통합 4륜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16 240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제 2 조. 안전규정

2.1. 각 클래스별 참가선수는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1.1. 전체 클래스 필수 안전장구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클래스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멧(하프페이스 이상, 풀페이스 권고)</li> <li>- 장갑(손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내 마모성 장갑) ※목장갑 제외</li> <li>- 신발(신축성 있는 가죽제품으로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신발/운동화)</li> <li>- 화재 시 위험성이 적은 재질의 긴팔 및 긴바지(화재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나일론 등 합성수지 재질의 트레이</li> </ul>	자전거용, 보드용, 패션헬멧 불가

	닝복 등 착용 자제 권고)	
--	----------------	--

표 17 전체 클래스 드라이버 안전장비 목록

2.1.2. 전체 클래스 권고 안전장구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슈퍼 클래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멧(FIA 8860-2018, 2010, 2004, FIA 8859-2015, Snell SA2010+ FIA 8858-2002, Snell SA 2015, FIA 8859-2015)</li> <li>- HANS(FIA 8858-2010, 2002)</li> <li>- 드라이버 수트(Overall)(FIA 8856-2000)</li> <li>- 방염내의(FIA 8856-2000)</li> <li>- 바라클라바(FIA 8856-2000)</li> <li>- 장갑(FIA 8856-2000)</li> <li>- 신발(FIA 8856-2000)</li> <li>- 양말(FIA 8856-2000)</li> </ul>	유효기간 없음
400 ~ 240 클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멧(풀페이스)</li> <li>- 드라이버 수트(Overall)(FIA 8856-2000)</li> <li>- 장갑(FIA 8856-2000)</li> <li>- 신발(FIA 8856-2000)</li> </ul>	

표 18 전체 클래스 드라이버 권고 안전장비 목록

2.1.3. 전체 클래스에 대한 안전장구 규정은 조직위 및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경기 최소 2개월 전 공지하도록 한다.

2.2. 전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차량 안전 장비의 장착을 권고한다.

2.2.1. 전체 클래스

안전장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점 식 이상의 하네스 및 이를 장착하기 위한 인증기간 유효 버킷시트</li> <li>- 차량 사고 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창문 레이싱 네트</li> <li>-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필수)</li> <li>-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li> <li>※ 경기장 가속구간 내 일정간격으로 대형 소화기 설치 실시</li> </ul>	

표 19 전체 클래스 필수 안전장비 목록

2.2.2. 차량 내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은 반드시 설치한다.

2.2.3. 참가차량은 사고 및 고장 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장치의 장착을 권고한다.

2.2.4. 별도의 연료를 준비할 경우 반드시 연료(휘발유/경유)전용 제리캔(Jerry can)을 사용한다.

### 2.3. 차량 검사

- 2.3.1. 검사는 경기 전 사전 검사 및 경기 후 의무/임의 검사로 진행된다.
- 2.3.2. 참가차량은 조직위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이 때, 참가차량은 출전상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3.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조직위의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사전 공지된 지정시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참가차량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2.3.4. 검사 결과에 의거 조직위의 판단 하에 드라이버 및 참가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참가 차량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 6 장. 짐카나 일반규정

### 제 1 조. 경기장

- 1.1. 이벤트는 대구주행시험장 범용로(780m×70m)공간 내 특설경기장에서 진행한다.
- 1.2. 경기장은 출발점(Start Line), 코스, 도착점(Finish Line)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드라이버는 출발신호와 함께 출발점에서 출발, 정해진 코스를 주파한 후 도착점 또는 도착점 이후 정차지점 내에 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이 때, 도착점 또는 도착점 이후 정차지점 내 차량을 정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행은 실격처리 한다.

### 제 2 조. 연습주행

- 2.1. 연습주행의 출발 순서는 클래스와 구분없이 임의로 진행될 수 있다.

### 제 3 조. 예선/본선

- 3.1. 예선주행 기록은 본선 토너먼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측정되며, 예선 최고기록을 바탕으로 본선 토너먼트의 대진표를 결정한다.
- 3.2. 예선주행 종료 후 각 클래스별 예선기록 및 본선 토너먼트의 대진표가 공식통지 된다.
- 3.3. 본선주행은 각 클래스 별 최대 32강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 3.4. 참가차량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시작 30분 전 까지 조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스타트 절차

- 4.1. 모든 클래스는 스탠딩 스타트(Standing Start)로 진행한다.
- 4.2. 참가차량은 경기일정에 따라 주행 10분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오피셜의 안내에 따라 출발 대기지역에 정렬한다.
- 4.3. 오피셜의 안내에 따라 스타트라인에 정렬한 후 오피셜의 녹색기 혹은 스타트 신호장치의 신호에 따라 출발한다.
- 4.4. 라인정렬 이후 스타트 신호 전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녹색 출발신호 점등 전 움직일 경우 플라잉 스타트(Flying Start)로 간주되어 해당 주행 차수는 실격처리 된다.
- 4.5. 출발 순서에 따라 자력으로 스타트라인에 1분이상 입차하지 못했거나 스타트라인에서 스타트 신호 후 1분 이상 출발하지 못한 참가차량의 해당 주행 차수는 실격처리 된다.
- 4.6. 참가차량은 경기장 내 전체 구간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4.6.1. 번아웃 등 노면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 4.6.2. 흡연 및 쓰레기 투기 행위

- 4.6.3. 지나친 제자리 공회전(Rev-up), 경적작동 등 소음유발을 통해 경기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 4.6.4. 오피셜의 허가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4.6.5. 오피셜의 허가 없이 통제장소에 팀크루 등이 출입하는 행위
- 4.6.6. 오피셜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제 5 조. 패독 및 피트

- 5.1. 패독 및 피트와 관련한 사항은 제4장 제5조와 동일한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다.

## 제 6 조. 경기 종료 및 복귀

- 6.1. 주행 차수별 각 경기는 출발준비 상태인 1~2대의 참가차량 모두가 도착점을 통과하여 도착점 또는 도착점 이후 정차지점 내 차량을 정차했을 때 종료된다.
- 6.2. 경기 종료 시 도착선의 기록표시계에 각 주행차선 별 주파기록(Elapse Time)이 표시된다.
- 6.3. 경기를 종료한 참가차량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라 20km/h 이하로 서행하며 패독으로 진출(Course Out) 한다.
- 6.4. 경기 종료 이후 경기장 내 과속, 급제동, 급가속 및 번아웃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1회 적발 시 기록 0.5초 가산, 2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주행차수를 실격처리 한다.

## 제 7 조. 기록계측 및 페널티

- 7.1. 기록계측은 1/1000초까지 계측이 가능한 국제공인 계측시스템을 사용한다.
- 7.2. 기록계측의 시작은 스타트 신호장치에 녹색등이 점등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방식과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한 시점부터 계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기 전 이를 공식 통지한다.
- 7.3. 기록시스템의 오류로 계측이 실패한 경우 재 주행의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 라운드의 드라이버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할 수 있다.
- 7.4. 각 클래스별 라운드(32강, 16강, 8강, 4강, 결승전)의 종료 후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록을 게시한다.
- 7.5. 주행 중 라바콘과의 충돌로 인하여 라바콘이 쓰러지거나 기존 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회당 1초~3초 씩 가산 페널티를 선수에게 적용한다.
- 7.6. 주행 중 사전 공지된 짐카나 코스를 이탈할 경우 해당선수의 해당 주행회차는 즉시 실격 처리 한다.

## 제 8 조. 경기의 중단과 재개

- 8.1. 경기의 중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4장 제8조와 동일한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다.

제 9 조. 경기포기 (Retire)

9.1. 경기포기와 관련한 사항은 제4장 제9조와 동일한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다.

## 제 7 장. 짐카나 기술규정

### 제 1 조. 차량기술규정

1.1. 검차 중 기술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요청을 실시하며, 시정요청 미 이행 및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 경기에 대한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1.2. 클래스 별 참가차량에 대한 기술규정은 다음과 같다.

#### 1.2.1. FWD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전륜구동 차량</li> <li>  ※ 자작차의 경우 조직위에 별도 문의 요망</li> <li>- 도로교통법에 의거 튜닝 및 부품에 대한 구조변경을 권고</li> <li>- 시트에 대한 탈거는 허용되나 내장재 및 에어백 탈거 불허</li> <li>  ※ 롤케이지, 보강재 장착 등에 의한 내장재 탈거는 허용</li> <li>- 본넷, 범퍼, 도어, 트렁크 등 주요 외장재에 대한 탈거 불허</li> <li>  ※ 냉각 등의 사유로 헤드램프 탈거는 허용</li> <li>  ※ 경량화를 위한 카본, FRP 및 폴리네이트 카본 등의 사용을 허용하며, 차량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출전 제한</li> <li>- 과다마모, 재생타이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국내외 시판 타이어 사용</li> <li>- 모든 연료의 사용을 허가한다.</li> <li>  ※ 단,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연료 및 시스템은 사용을 금하며, 연료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FIA 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사용만을 허용</li> </ul>	

표 20 FWD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 1.2.2. RWD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후륜구동 차량</li> <li>- 이하 1.2.1. FWD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21 RWD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 1.2.3. 4WD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사륜구동 차량</li> <li>- 이하 1.2.1. FWD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22 4WD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 1.2.4. 경차 클래스

차량규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 등록된 국산/수입 경형 차량 ※ <b>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차량만 참가 가능</b></li> <li>- 이하 1.2.1. FWD 클래스와 동일</li> </ul>	

표 23 경차 클래스 차량기술규정

제 2 조. 안전규정

2.1. 각 클래스별 참가선수는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1.1. 전체 클래스 필수 안전장구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클래스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멧(하프페이스 이상, 풀페이스 권고)</li> <li>- 장갑(손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내 마모성 장갑) ※<b>목장갑 제외</b></li> <li>- 신발(신축성 있는 가죽제품으로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신발/운동화)</li> <li>- 화재 시 위험성이 적은 재질의 긴팔 및 긴바지(화재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나일론 등 합성수지 재질의 트레이닝복 등 착용 자제 권고)</li> </ul>	자전거용, 보드용, 패션헬멧 불가능

표 24 전체 클래스 드라이버 안전장비 목록

2.1.2. 전체 클래스 권고 안전장구

클래스	안전장구	비 고
클래스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멧(FIA 8860-2018, 2010, 2004, FIA 8859-2015, Snell SA2010+ FIA 8858-2002, Snell SA 2015, FIA 8859-2015)</li> <li>- 드라이버 수트(Overall)(FIA 8856-2000)</li> <li>- 바라클라바(FIA 8856-2000)</li> <li>- 장갑(FIA 8856-2000)</li> <li>- 신발(FIA 8856-2000)</li> </ul>	유효기간 없음

표 25 전체 클래스 드라이버 권고 안전장비 목록

2.1.3. 전체 클래스에 대한 안전장구 규정은 조직위 및 경기위원회의 판단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경기 최소 2개월 전 공지하도록 한다.

2.2. 전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차량 안전 장비의 장착을 권고한다.

2.2.1. 전체 클래스

안전장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점 식 이상의 하네스 및 이를 장착하기 위한 인증기간 유효 버킷시트</li> <li>- 차량 사고 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창문 레이싱 넷</li> <li>-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필수)</li> <li>-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 시스템</li> <li>※ 경기장 내 일정간격으로 대형 소화기 설치 실시</li> </ul>	

표 26 전체 클래스 필수 안전장비 목록

2.2.2. 차량 내 롤케이지 장착 시 롤케이지 보호 패딩은 반드시 설치한다.

2.2.3. 출전차량은 사고 및 고장 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장치의 장착을 권고한다.

2.2.4. 별도의 연료를 준비할 경우 반드시 연료(휘발유/경유)전용 제리캔(Jerry can)을 사용한다.

#### 2.4. 차량 검사

2.4. 차량 검차는 제5장 제2조 2.3.과 동일한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 1 조. 규정 위반

- 1.1. 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치된다.

### 제 2 조. 규정의 효력

- 2.1. 본 규정은 참가신청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 제 3 조. 규정의 해석

- 3.1. 본 규정의 해석 및 관련 문의는 대회사무국 (053-670-7825)으로 문의한다.

### 제 4 조. 규정의 변경

- 4.1. 본 규정은 조직위의 논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대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4.2. 조직위는 본 규정을 공식 홈페이지([www.daegutuningcar.or.kr](http://www.daegutuningcar.or.kr))에 이를 공지하고, 참가자에게 배포하여 모든 참가자 및 관계자가 본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